

투자위험등급 : 3등급
[중간 위험]

삼성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낮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삼성배당플러스30증권투자신탁Ⅱ 제2호[채권혼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배당플러스30증권투자신탁Ⅱ 제2호[채권혼합]를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삼성배당플러스30증권투자신탁Ⅱ 제2호[채권혼합]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집합투자업자(www.samsungfund.com)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4. 작 성 기 준 일 : 2013. 3.18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3. 3.28
6. 모집(매출) 증권 종류 및 수 : 투자신탁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집(매출) 총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이 집합투자기구는 별도의 모집(매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 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마. 특수형태
3. 모집 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 나.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변경 내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나. 종류형 구조
 - 다. 모자형 구조
 - 라. 전환형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가. 투자 대상
 - 나. 투자 제한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나. 수익 구조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11.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 가. 매입
 - 나. 환매
 - 다. 전환
- 12. 기준가격 산정 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 이익 배분
 - 나. 과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재무정보
 - 가. 요약 재무정보
 - 나. 대차대조표
 - 다. 손익계산서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가. 연평균 수익률
 -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제4부 |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가. 회사 개요
 - 나. 주요 업무
 -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라. 운용자산 규모
2. 운용관련 업무 위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위탁회사
 - 나. 기타 업무의 위탁회사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 가. 회사 개요
 - 나. 주요 업무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가. 회사 개요
 - 나. 주요 업무

제5부 |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가. 수익자총회
 - 나. 잔여재산분배
 -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라. 손해배상책임
 - 마. 재판관할
 -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증권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가. 의무 해지
 - 나. 임의 해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 보고서

나. 수시 공시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 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동 증권(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설명서 포함)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클래스)	펀드코드
삼성배당플러스30증권투자신탁Ⅱ 제2호[채권혼합]	47297
A	94254
C	77574
Ce	78683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혼합채권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부의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 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추가 모집이 가능한 개방형(추가형) 투자신탁으로, 모집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모집기간을 별도로 정해두지 않습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별도의 모집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samsungfund.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특이사항 없음
매출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주)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부의 "11.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클래스)	펀드코드
삼성배당플러스30증권투자신탁Ⅱ 제2호[채권혼합]	47297
A	94254
C	77574
Ce	78683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5. 1.18	최초 설정
2007.12.28	종류형투자신탁으로 변경
2009. 5. 3	자본시장법에 따른 명칭 변경(삼성 배당플러스30 혼합종류형투자신탁 Ⅱ 제2호→삼성배당플러스30증권투자신탁Ⅱ 제2호[채권혼합])
2009.11.20	투자대상 취득한도 관련 변경
2010. 1.26	운용역변경(나영남 운용역->유영재 운용역) 등
2010. 5. 3	판매회사 보수 등 변경
2010. 5.14	운용역 변경(김용범 운용역->김상철 운용역)
2010. 7. 7	운용역 변경(김상철 운용역->송진구 운용역)
2011. 1.24	운용역 변경(유영재 운용역->윤상아 운용역)
2012. 2.20	운용역 변경(송진구 운용역 -> 진성룡 운용역)
2012.10.15	운용역 변경(진성룡 운용역 -> 양병태 운용역)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 또는 신탁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2.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삼성자산운용(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50번지 (대표전화 : 02-3774-7600, 콜센터 : 080-377-4777)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의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성명	출생년도	직위	운용 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양병태	1968	수석	14개	6,370억	- 1992년 02월 성균관대 경제학 학사 - 1994년 02월 성균관대 경제학 석사 - 1994년 07월 ~ 2001년 11월 신한증권 기업분석팀 - 2001년 11월 ~ 2002년 07월 SK 투자신탁운용 리서치팀 및 펀드운용 - 2002년 07월 ~ 2008년 10월 한화투자신탁운용 국내외 펀드운용업무 - 2008년 10월 ~ 2012년 07월 삼성자산운용 LT주식운용본부 - 2012년 07월 ~ 2012년 11월 삼성자산운용 전략운용본부 - 2012년 12월 ~ 現 삼성자산운용 전략운용팀
윤상아	1983	전임	105개	28,627억	- 2007년 08월 고려대 경제학 학사 - 2008년 01월 ~ 2010년 09월 삼성자산운용 채권4팀 - 2010년 10월 ~ 2012년 11월 삼성자산운용 FI운용1팀 - 2012년 12월 ~ 現 삼성자산운용 FI운용팀

주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양병태-1개(200억), 윤상아-1개 (94억)

주3)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4)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변경 내역

운용역	운용 기간
김용범	2010. 1.26 ~ 2010. 5.13
유영재	2010. 1.26 ~ 2011. 1.23
김상철	2010. 5.14 ~ 2010. 7. 6
송진구	2010. 7. 7 ~ 2012. 2.19

운용역	운용 기간
윤상아	2011. 1.24 ~ 현재
진성룡	2012. 2.20 ~ 2012.10.14
양병태	2012.10.15 ~ 현재

주1) 2013. 3.20 기준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1)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별	최초설정일	가입자격
A	2009. 5.19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C	2005. 1.18	가입제한이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Ce	2008. 1.23	온라인(On-line) 판매전용 수익증권

(2)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클래스	수수료			보수(연,%)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집합투자	판매	신탁	일반사무
A	납입금액의 0.7% 이내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0.45	0.50	0.04	-
C	-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0.45	0.95	0.04	-
Ce	-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0.45	0.90	0.04	-

주1) 선취 판매 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별로 차등적용 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투자신탁 보수에 대한 추가 정보(판매회사 보수의 기간별 차등 적용 등)은 "제2부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자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

라. 전환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가.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채권 및 주식 등에 투자하되, 주로 채권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 혼합]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하되, 주식에의 투자는 배당수익률을 기준으로 사전에 정한 선별과정(Filtering)을 통해 선정된 종목을 중심으로 매매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본차익 및 배당수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나. 비교지수 : 통안채1년 x 100%

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이 비교지수가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된 다른 지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주식	30% 이하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함) 다만, 주식에의 투자는 집합투자증권등(주식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혀 투자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등은 제외)과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하로 함.
2)	채권	6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권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채권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3)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	양도성 예금증서	40% 이하	양도성 예금증서로서 발행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이 A2-이상인 것
5)	집합투자증권	5%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증권
6)		30% 이하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7)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음 가.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8)	환매조건부 매도	50% 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 총액의 50% 이내로 환매조건부 매도 가능
9)	증권의 대여	50% 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 50% 이내로 증권 대여 가능
10)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2),3),4),5),6)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간 ②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③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④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2),3),4),5),6)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위의 1),2),3),5),6)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함. 다만,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1개월간은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8),9)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②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③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④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⑤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주1) 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자산별 투자금액(파생상품의 경우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적용)이 투자신탁 자산총액(파생상품의 경우 상품별로 달리 적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합니다.

주2)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집합투자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단,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와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음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동일종목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이하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각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6호나목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파생결합증권(2011년2월3일까지는 가목의 투자비율까지 투자 가능),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하 이 목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은행·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	
동일법인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투자한도 초과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한도(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제외)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투자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에 대한 취득금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행위	
계열회사 투자한도 초과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후순위채권에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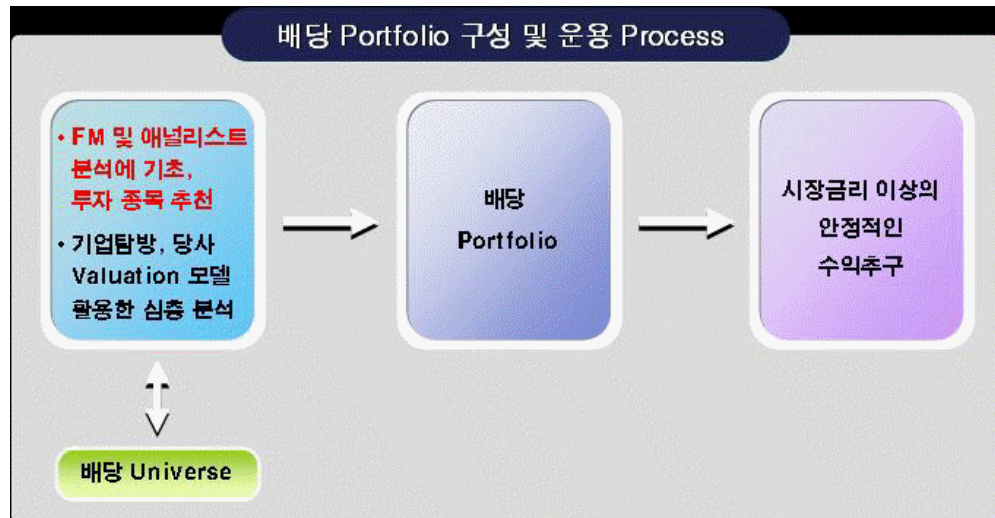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1) 주식 기본운용 전략

· 투자대상 종목군(Universe)의 선정 기준

- ① KOSPI 배당수익률 이상 종목으로 구성
- ② 당사 리서치 팀에서 신용위험(크레딧 리스크, Credit risk) 고려 하여 구성
- ③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 대상 Universe 종목 수 변경될 수 있음
- ④ 정기적인 기업방문을 통해 기업의 영업현황을 체크하고, 투자대상 종목군(Universe) 편출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2) 배당수익률에 따른 매매 전략

1) 매수 전략 : 투자대상 종목군(Universe) 중 예상배당 수익률이 4%이상인 경우 매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① 대상종목이 다수인 경우에는 펀드매니저의 재량에 의합니다.
- ② 동일종목의 투자한도는 10%이내로 합니다.
- ③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인해 투자대상 종목의 예상배당 수익률이 하락할 경우에는 상기 매수전략 원칙에 불구하고 매입기준수익률인 4%미만의 종목에 대해서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2) 매도 전략

- ① 매입가 대비 4%이상 상승 시 분할 매도하거나 또는
- ② 주가 상승으로 예상배당 수익률이 4%미만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매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매도 할 수 있습니다.
 - 펀드멘탈에 변화가 생겨 이익 감소 또는 재무리스크 발생시
 - 결산기 직전 (예상)배당수익률 이상의 자본수익(Capital Gain) 발생시. 단, 주가가 하락하여 매입가 대비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종목을 재점검하여 매각 또는 보유 여부를 결정합니다.
- 3) 보유 전략 :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펀드멘탈의 변화에 따른 이익 증가가 예상되거나 추가적인 자본수익(Capital Gain)이 기대될 경우에는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3) 채권 운용전략

- 주로 안정성이 높은 국공채 및 통안채 등 채권으로 운용합니다.

(4) 이 투자신탁은 30% 이하를 주식에 투자하나 주식시장 및 기업의 실적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기 때문

에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 지수 : 통안채1년 x 100%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수익 구조

- 해당사항 없음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국내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자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증권 등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자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특정주식 집중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일부분을 예상 배당수익률에 따라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시장 전체의 성과와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 동성부족에 따라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인정하 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 는 투자설명서 “제2부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신탁 규모 변동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 투 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투자신탁 해지 위험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 또는 해산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소규모의 위험	투자신탁의 설정금액이 소액이거나, 환매 등에 의해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 하로 작아지는 경우, 분산투자 등 원활한 펀드 운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30%이하, 나머지 자산에 채권 및 유동성자산등에 투자하여 이자소득 및 자본이
득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으로 5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중간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
다.
따라서 배당수익률을 기준으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본차익과 배
당수익을 추구하는 안정적인 성향의 투자자를 주된 투자권유 대상으로 합니다.

[투자위험등급구분]

- 1등급 : 매우높은위험
- 2등급 : 높은위험
- 3등급 : 중간위험
- 4등급 : 낮은위험
- 5등급 : 매우낮은위험



<삼성자산운용(주)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위험	- 위험자산^{주1)}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가능비율^{주1)}이 투자원금대비 -15%이상인 구조화된 상품(전략)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 위험자산에의 최대편입비가 40%초과 60%미만인 집합투자기구 - 주식시장전체를 추적대상으로 하는 인덱스운용전략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5%미만인 구조화된 상품(전략)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위험	- 위험자산에의 최대편입비가 40%이하인 집합투자기구 - 주식시장전체를 추적대상으로 하는 인덱스운용전략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주식 등의 최대편입비가 60%이하인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0%이하인 구조화된 상품(전략)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원금보존추구형) - A-급 이하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위험	- 우량등급(A-이상)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낮은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국공채 전용 집합투자기구 (듀레이션 3년미만)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주1) - 위험자산 :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이하)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 글로벌 채권 등인 경우 글로벌 신용등급체계는 국내투기등급채권에 적용되는 국내 신용등급체계보다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글로벌 신용등급 체계에서는 투기등급이지만 국내신용등급체계 및 평가방법을 고려하여 투자등급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험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최대손실가능비율 : 사전에 계획된 수익구조상 발생가능한 손실가능비율. 다만 신용위험 및 구조의 복잡성 등으로 실제손실이 최대손실가능비율보다 클 수 있습니다.
- 주2) -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여부 및 투자국가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각 자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s)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 주3) - 상세설명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동 기준에 준하여 별도로 분류합니다.
- 본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삼성자산운용(주)의 자체기준으로 투자자의 위험성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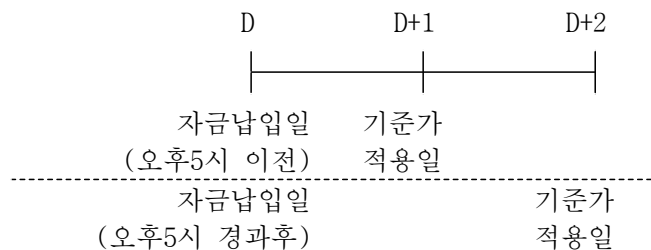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A클래스 :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 C클래스 : 가입제한이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Ce클래스 : 온라인(On-line) 판매전용 수익증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 오후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2) 오후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3)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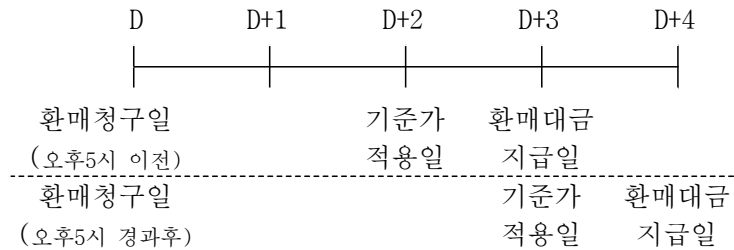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에서 이 투자신탁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도 환매가 가능합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 오후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2) 오후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5영업일(D+4)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3)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환매수수료는 포트폴리오 재조정 등을 위한 비용의 증가를 이유로 부과하는 것이며, 이는 투자자의 환매금액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환매수수료	비고(지급시기)
A클래스	90일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C클래스	90일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Ce클래스	90일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주) 단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합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오후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오후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물보유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 (오후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3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 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법 시행령 제257조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1)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2)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청받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4) 1) 내지 3)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환매연기에 따른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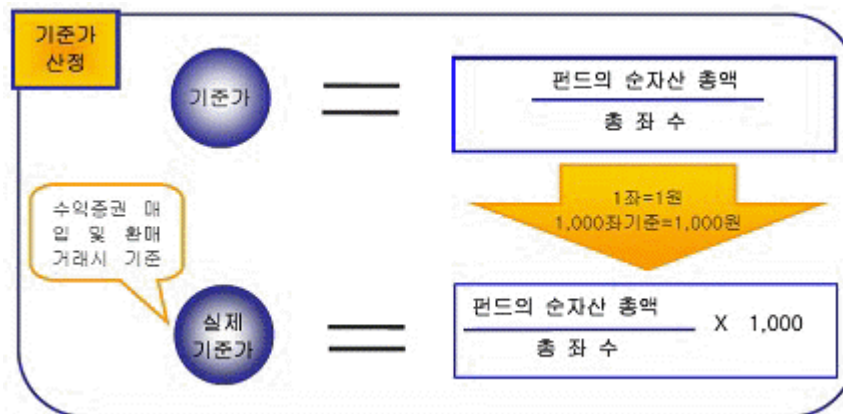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 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산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 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samsungfund.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수익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수익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다만,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 1) 구성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
- 2) 업무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함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보수 및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A	제한없음	납입금액의 0.7% 이내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
C	제한없음	-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
Ce	온라인용	-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주1) 환매수수료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으로 징구됩니다.

주2) 선취 판매 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투자신탁 관련 보수등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집합 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 비용	합성 총 보수 · 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 거래비용
A	0.45	0.50	0.04	-	0.0099	0.9999	0.9999	0.1567
C	0.45	0.95	0.04	-	0.01	1.45	1.45	0.162
Ce	0.45	0.90	0.04	-	0.0093	1.3993	1.3993	0.1654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주1) 총보수·비용비율은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주2)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으로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클래스 포함)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3)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수치화된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단위: 원)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A클래스	99,290	313,012	548,640	1,248,860
		선취 판매수수료 : 1,000만원 X 0.7% = 70,000원			
	C클래스	145,000	457,113	801,217	1,823,794
	Ce클래스	139,930	441,129	773,202	1,760,025

주1)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정율식으로 인하되는 판매회사 보수분은 미반영)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신탁 관련 비용

- 1)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 2)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 비용
- 9) 법 제442조에 의한 분담금 비용
-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이익금이 "零(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 (2) 수익자는 (1)에 의하여 분배되는 이익금을 금전 등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3)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4)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 다음의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이며, 향후 세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1)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2)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으로 함.				

- 3)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게 됩니다.

-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1)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이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 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제 8기, 7기, 6기의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요약 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대차대조표			
항목	8기 (2013. 1. 17)	7기 (2012. 1. 17)	6기 (2011. 1. 17)
자산총계	29,692	45,715	239,309
운용자산	27,489	45,003	235,754
증권	22,963	37,337	209,389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4,526	7,666	26,365
기타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2,203	712	3,556
부채총계	118	273	2,278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18	273	2,278
자본총계	29,575	45,442	237,031
원본	29,133	46,397	214,899
수익조정금	28	-97	-405
이익잉여금	414	-858	22,537

(단위 : 백만원)

손익계산서			
항목	8기 (2012. 1. 18~2013. 1. 17)	7기 (2011. 1. 18~2012. 1. 17)	6기 (2010. 1. 18~2011. 1. 17)
운용수익	1,897	1,495	25,901
이자수익	889	3,935	5,139
배당수익	225	874	1,737
매매/평가차익(손)	782	-3,340	18,999
기타수익	1	26	26

항목	8기 (2012. 1.18~2013. 1.17)	7기 (2011. 1.18~2012. 1.17)	6기 (2010. 1.18~2011. 1.17)
운용비용	528	2,353	3,364
관련회사 보수	523	2,338	3,342
매매수수료	1	3	6
기타비용	4	11	16
당기순이익	1,369	-858	22,537
매매회전율	294.58	344.06	151.39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 억좌, 억원)

구분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A클래스	2012.1.18 ~2013.1.17	45	45	35	35	46	46	34	34
	2011.1.18 ~2012.1.17	41	41	39	39	35	35	45	45
	2010.1.18 ~2011.1.17	24	24	54	54	40	40	37	37
	2009.5.19 ~2010.1.17	0	0	25	25	3	3	22	22
C클래스	2012.1.18 ~2013.1.17	417	417	49	49	209	209	256	256
	2011.1.18 ~2012.1.17	2,319	2,319	151	151	2,054	2,054	417	417
	2010.1.18 ~2011.1.17	2,237	2,237	140	140	269	269	2,109	2,109
	2009.1.18 ~2010.1.17	2,630	2,630	105	105	623	623	2,112	2,112
Ce클래스	2012.1.18 ~2013.1.17	3	3	1	1	2	2	1	1
	2011.1.18 ~2012.1.17	3	3	2	2	2	2	3	3
	2010.1.18 ~2011.1.17	3	3	3	3	2	2	3	3
	2009.1.18 ~2010.1.17	2	2	3	3	3	3	3	3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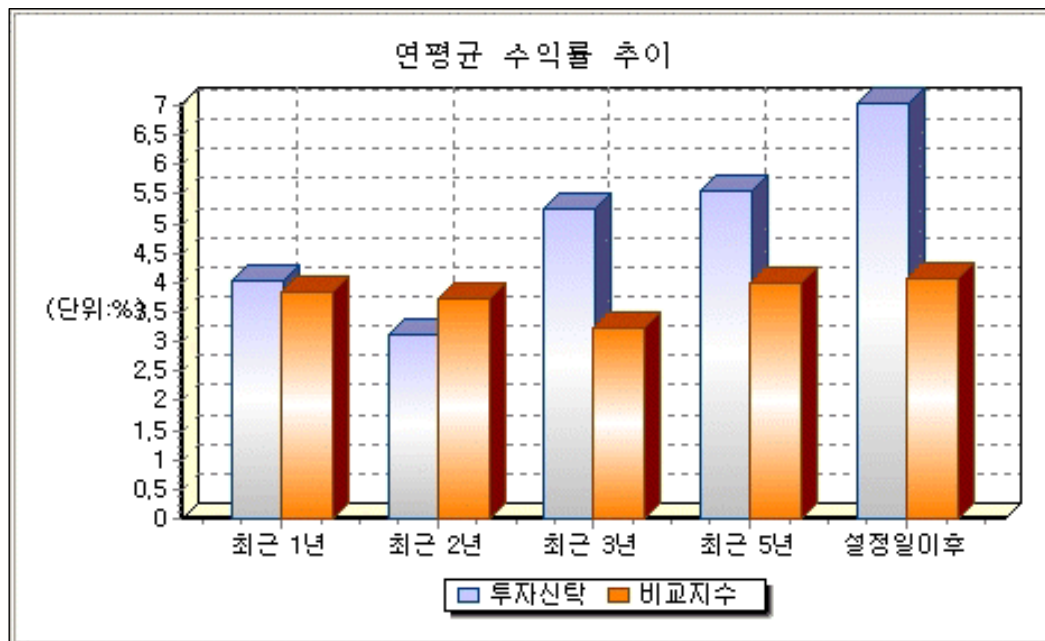
가. 연평균 수익률

(1) 삼성배당플러스30증권투자신탁Ⅱ 제2호[채권혼합]

연도	최근 1년 (12.03.19 ~13.03.18)	최근 2년 (11.03.19 ~13.03.18)	최근 3년 (10.03.19 ~13.03.18)	최근 5년 (08.03.19 ~13.03.18)	설정일 이후 (05.01.18 ~13.03.18)
투자신탁	4.04 %	3.12 %	5.24 %	5.57 %	7.04 %
비교지수	3.86 %	3.73 %	3.25 %	3.98 %	4.06 %

주1) 비교지수 : 통안채1년*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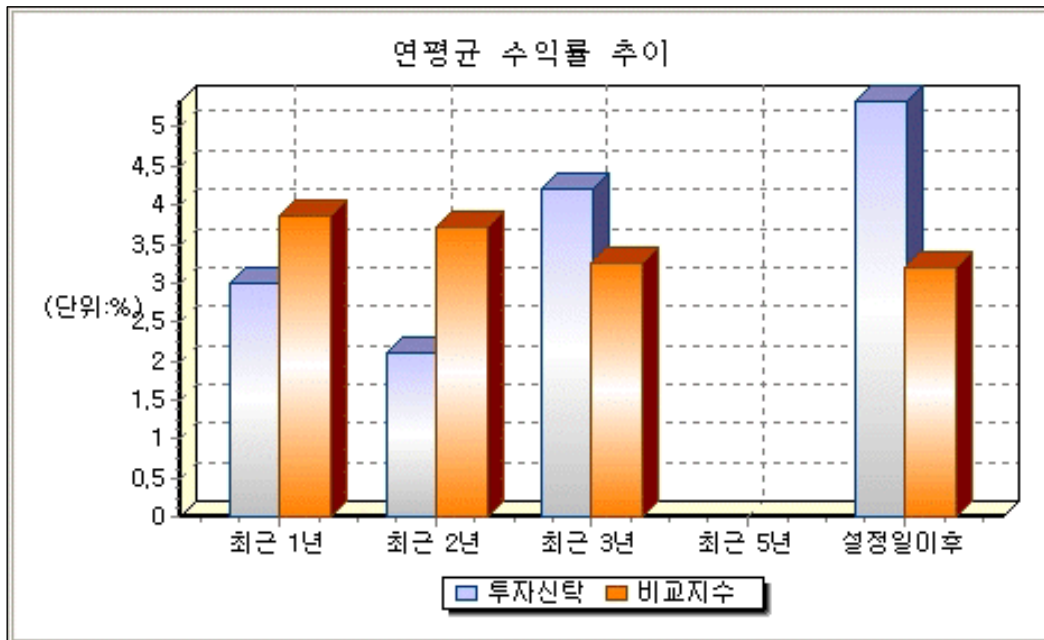


(2) 삼성배당플러스30증권투자신탁Ⅱ 제2호[채권혼합](A)

연도	최근 1년 (12.03.19 ~13.03.18)	최근 2년 (11.03.19 ~13.03.18)	최근 3년 (10.03.19 ~13.03.18)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09.05.19 ~13.03.18)
투자신탁	3.01 %	2.11 %	4.20 %		5.33 %
비교지수	3.86 %	3.73 %	3.25 %		3.19 %

주1) 비교지수 : 통안채1년*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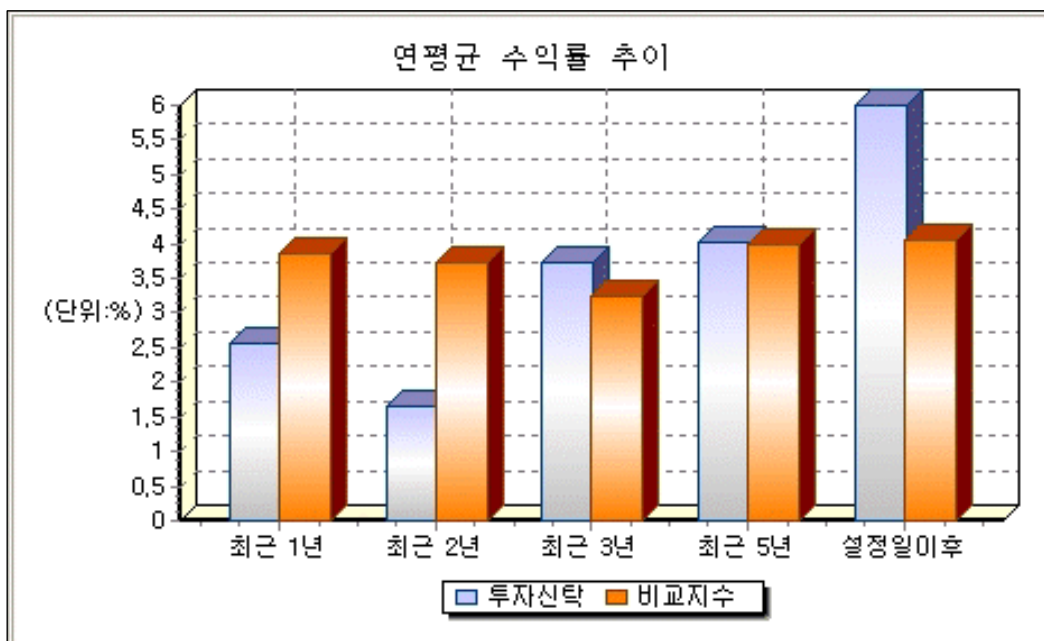


(3) 삼성배당플러스30증권투자신탁Ⅱ 제2호[채권혼합](C)

연도	최근 1년 (12.03.19 ~13.03.18)	최근 2년 (11.03.19 ~13.03.18)	최근 3년 (10.03.19 ~13.03.18)	최근 5년 (08.03.19 ~13.03.18)	설정일 이후 (05.01.18 ~13.03.18)
투자신탁	2.55 %	1.65 %	3.74 %	4.03 %	6.00 %
비교지수	3.86 %	3.73 %	3.25 %	3.98 %	4.06 %

주1) 비교지수 : 통안채1년*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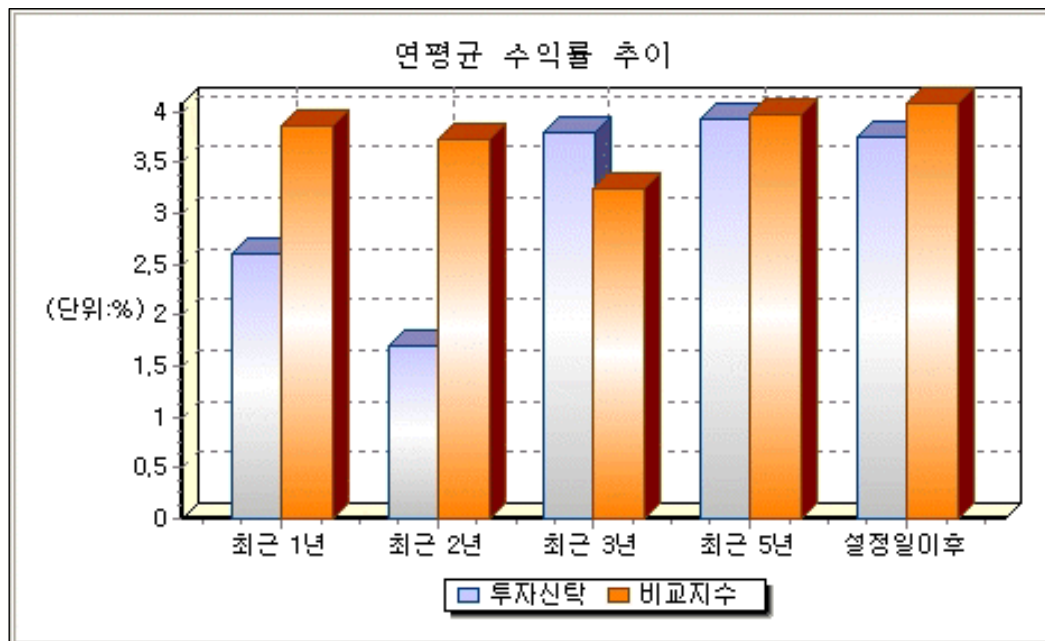


(4) 삼성배당플러스30증권투자신탁Ⅱ 제2호[채권혼합](Ce)

연도	최근 1년 (12.03.19 ~13.03.18)	최근 2년 (11.03.19 ~13.03.18)	최근 3년 (10.03.19 ~13.03.18)	최근 5년 (08.03.19 ~13.03.18)	설정일 이후 (08.01.23 ~13.03.18)
투자신탁	2.60 %	1.70 %	3.79 %	3.93 %	3.74 %
비교지수	3.86 %	3.73 %	3.25 %	3.98 %	4.08 %

주1) 비교지수 : 통안채1년*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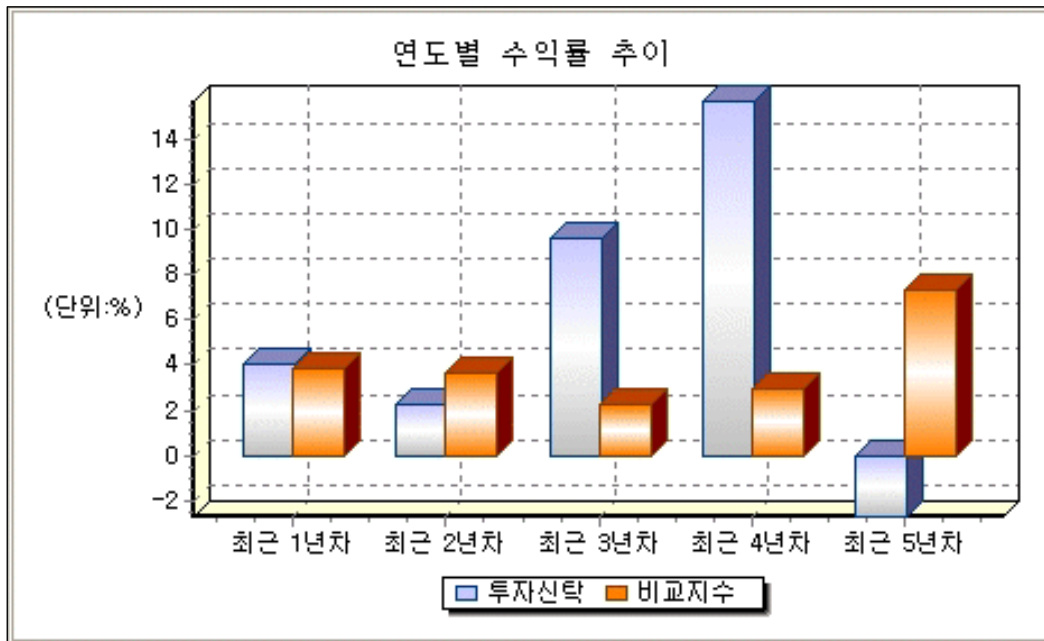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1) 삼성배당플러스30증권투자신탁Ⅱ 제2호[채권혼합]

연도	최근 1년차 (12.03.19 ~13.03.18)	최근 2년차 (11.03.19 ~12.03.18)	최근 3년차 (10.03.19 ~11.03.18)	최근 4년차 (09.03.19 ~10.03.18)	최근 5년차 (08.03.19 ~09.03.18)
투자신탁	4.04 %	2.22 %	9.60 %	15.67 %	-2.71 %
비교지수	3.86 %	3.61 %	2.29 %	2.93 %	7.28 %

주1) 비교지수 : 통안채1년*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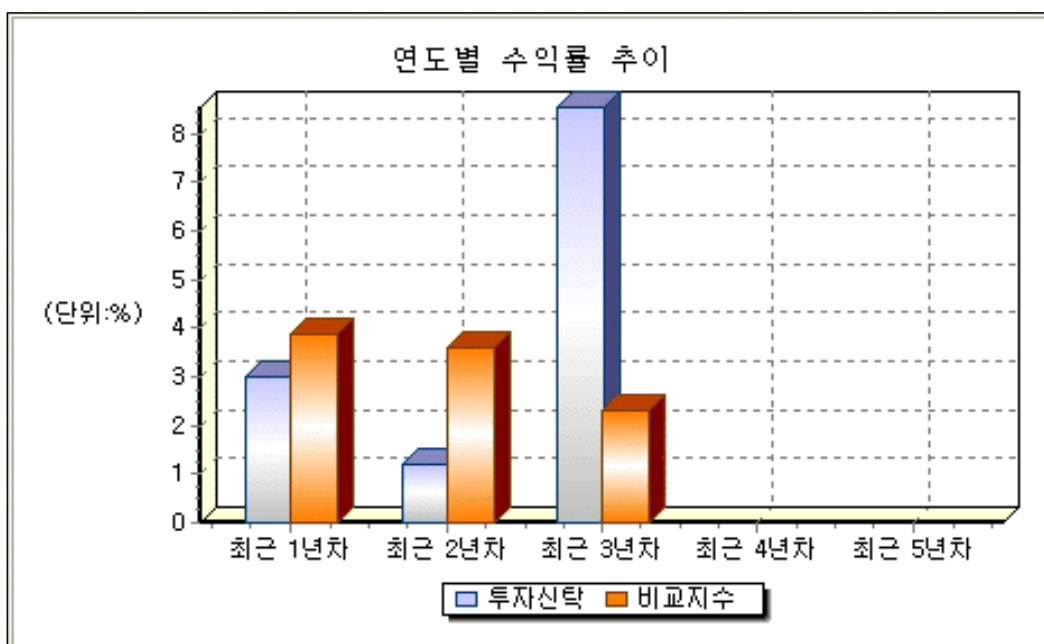


(2) 삼성배당플러스30증권투자신탁Ⅱ 제2호[채권혼합](A)

연도	최근 1년차 (12.03.19 ~13.03.18)	최근 2년차 (11.03.19 ~12.03.18)	최근 3년차 (10.03.19 ~11.03.18)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투자신탁	3.01 %	1.21 %	8.54 %		
비교지수	3.86 %	3.61 %	2.29 %		

주1) 비교지수 : 통안채1년*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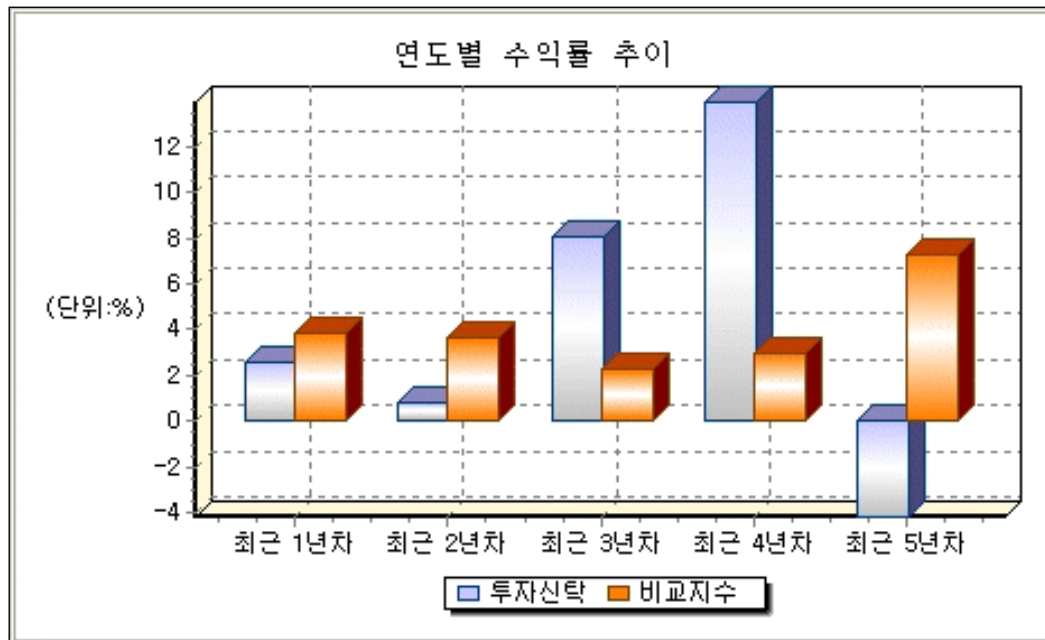


(3) 삼성배당플러스30증권투자신탁Ⅱ 제2호[채권혼합](C)

연도	최근 1년차 (12.03.19 ~13.03.18)	최근 2년차 (11.03.19 ~12.03.18)	최근 3년차 (10.03.19 ~11.03.18)	최근 4년차 (09.03.19 ~10.03.18)	최근 5년차 (08.03.19 ~09.03.18)
투자신탁	2.55 %	0.76 %	8.05 %	13.93 %	-4.19 %
비교지수	3.86 %	3.61 %	2.29 %	2.93 %	7.28 %

주1) 비교지수 : 통안채1년*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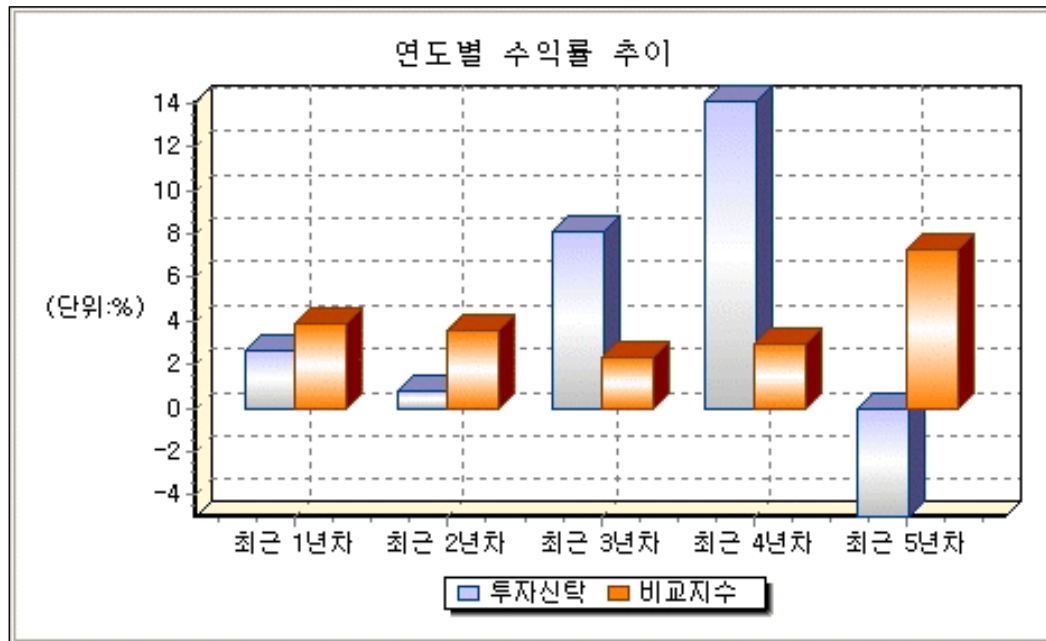


(4) 삼성배당플러스30증권투자신탁Ⅱ 제2호[채권혼합](Ce)

연도	최근 1년차 (12.03.19 ~13.03.18)	최근 2년차 (11.03.19 ~12.03.18)	최근 3년차 (10.03.19 ~11.03.18)	최근 4년차 (09.03.19 ~10.03.18)	최근 5년차 (08.03.19 ~09.03.18)
투자신탁	2.60 %	0.81 %	8.11 %	14.09 %	-4.98 %
비교지수	3.86 %	3.61 %	2.29 %	2.93 %	7.28 %

주1) 비교지수 : 통안채1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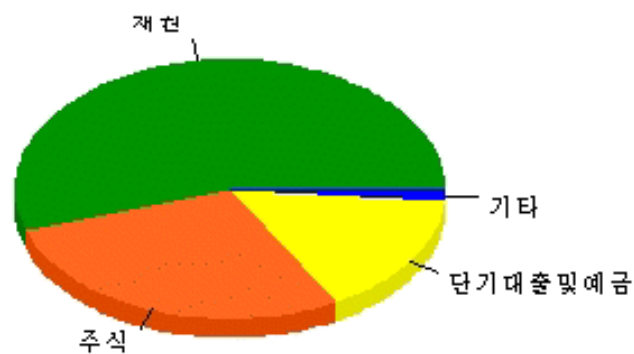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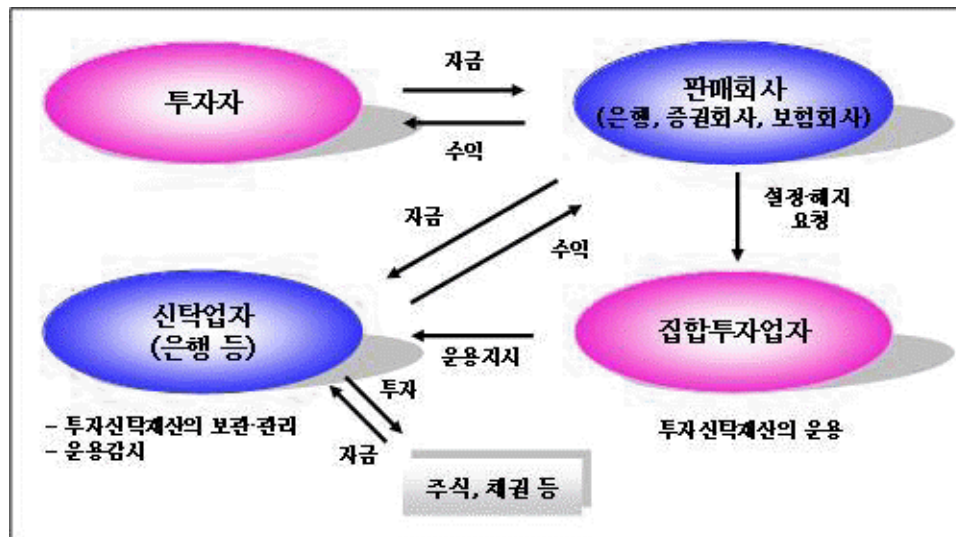
(2012.12.31 기준, 억원)

통화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파생 결합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85	166	0	0	0	0	0	0	0	0	46	5	302
합계	85	166	0	0	0	0	0	0	0	0	46	5	302



■ 채권	54.96 %	■ 주식	28.18 %
■ 단기대출및예금	15.34 %	■ 기타	1.52 %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삼성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50번지 (연락처 : 02-3774-7600, www.samsungfund.com)
회사 연혁	1998.09 삼성생명투자신운용설립 (납입자본금 300억원) 1999.12 舊 삼성투자신운용 흡수 합병(납입자본금 632억) 2000.03 자본금 300억 유상증자 (납입자본금 932억) 2000.03 삼성생명투자신탁운용에서 삼성투자신탁운용으로 상호 변경 2001.01 업계 수탁고 1위 달성 2001.04 수탁고 20조 달성 2001.11 연기금 투자폴 주간 운용사 선정 2002.01 국내 최초 상장지수투자신탁 KODEX200 증권거래소 상장 2003.01 관리자산 50조원 2004.12 관리자산 60조원 2005.04 ABF 펀드 설정(아시아채권펀드의 한국내 운용사로 선정) 2005.11 연기금투자폴 주간운용사 재선정 2008.03 관리자산 74조원 2008.04 홍콩 현지법인 영업인가 2008.09 싱가포르 현지법인 영업인가 2008.12 대한민국 증권대상 수상(서울경제신문 주최)

회사 연혁	2010.04 삼성투자신탁운용에서 삼성자산운용으로 상호 변경
자본금	934억
주요주주현황	삼성증권(65.3%), 삼성생명(5.5%), 삼성중공업(3.9%) 등

주) 산정 기준일은 2012. 3.31일 입니다.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선관 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억원)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항목	11.03.31	12.03.31	항목	11.03.31	12.03.31
현금및현금성자산	128	24	순이자손익	55	61
매도가능금융자산	3	3	순수수료손익	993	1,177
만기보유금융자산	200	100	기타영업수익	9	8
대여금및수취채권	2,446	2,012	영업수익	1,058	1,246
유형자산	22	59	인건비	388	475
무형자산	123	124	감가상각비와기타상각비	19	22
기타자산	44	46	일반판매비와관리비	295	282
자산총계	2,966	2,368	기타영업비용	3	4
예수부채	1,007	229	세전손익	353	462
기타부채	121	154	법인세비용	93	131
부채총계	1,128	383	당기순이익	260	331
자본금및자본잉여금	935	935	기타포괄손익	-1	4
이익잉여금	903	1,048	총포괄이익	259	335
기타잉여금	-1	3			
자본총계	1,837	1,985			

(연결 재무제표)

라. 운용자산 규모

(2013. 3.18 현재/억좌)

구분	증권					MMF	특별자산	부동산	혼합자산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 상품	재간접					
수탁고	112,787	19,048	37,435	40,017	123,758	44,680	391	6,262	921	385,298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 개요

회사명	부산은행
주소 및 연락처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0-38 전화번호 : 1588-6200
회사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busanbank.co.kr

(2) 주요 업무

-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4)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5)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6) 증권외 상환금의 수입
- 7)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8)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1) 의무

- ① 신탁업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계약,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2)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연대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 해당사항 없음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KAP)	나이스채권평가	KIS채권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광화문빌딩 9층 TEL: 02-399-335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번지 한섬빌딩 6층 TEL: 02-398-390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한국화재보험협회 4층 TEL: 02-3215-1416
회사 연역 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bp.com	www.npricing.co.kr	www.bond.co.kr

(2) 주요 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1)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2)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3)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수익자총회의 소집

- ①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②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③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의결권 행사 방법

- ①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 ②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에서 의결된 찬반비율에 비례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

-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②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그 이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은 없습니다.

-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계약 제3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사유에 의한 신탁업자의 변경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4)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9) 그 밖에 수익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1)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2)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2)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1)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3)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1) 이 상품의 신탁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수익자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증권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나. 임의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 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②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③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1)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위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2)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②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수익사항
- ③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④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②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③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④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투자운용인력의 변경/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 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 공시

(1) 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공시

- 1)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④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⑦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2)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samsungfund.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운용한 집합투자 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8) 설정 및 설립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10)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①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②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2)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4) 수익자에 대한 공고 등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증권의 거래	- 평가 항목 중개거래 시장점유율, 거래관련 자격보유여부, 조직 및 인력현황, 리서치 서비스의 질, 감독기관 제재 및 시정조치 내역, 결제안정성, 시장정보 제공능력, 매매체결의 신속성, 거래관련 보안유지 능력, 세미나 개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 선정방법 평가방법을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트레이더 등 중개사와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담당자들이 분기 1회 이상 배점방식에 의해 평가항목별 점수를 평가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어	내용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의 50%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보수 또는 총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판매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판매 및 관리 등 집합투자증권 매입, 환매 및 투자기간 중 지속적으로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간접적으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으로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보수, 성과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상 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판매수수료	판매회사가 판매 또는 환매시 일시에 투자자로부터 받거나 투자기간 동안 분할하여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어	내용
	투자자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수취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지급 받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 등의 명칭으로 구분합니다.
설정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관련 법령 등에서는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고객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삼성배당플러스30증권투자신탁 II 제2호[채권혼합]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품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받은 이 상품이 귀하께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에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께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절취선

----- (판매직원 성명: 서명) -----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판매회사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삼성배당플러스30증권투자신탁 II 제2호[채권혼합]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고객 확인 사항	고객기재사항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받았음)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적합함)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제공받고 들었음)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에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들었고 권유받았음)

년 월 일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